

Ⓢ 0437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6-4487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/ 의무팀장 이재용(6540)/ 과장 김철욱(6536)/ E-mail: leokma0817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2-14195호

시행일자 2022. 2. 25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코로나19 의약품 처방 관련 재협조요청(식품의약품안전처)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가. 대의협 제0622-08644호(2021.10.21.)

나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-1878(2022.02.24)

3.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해 10월 말라리아 치료제 ‘피라맥스정’을 코로나19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예방·치료를 효능·효과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하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요청해온바 있습니다.

4.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보도에 일부 의료기관이 ‘피라맥스정’을 코로나19 예방·치료 목적으로 처방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로 재협조를 요청해온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-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은 ‘베클루리주(렘데시비르)’, ‘렉키로나주(레그단비맵)’, ‘팍스로비드’가 있으며 그 외 의약품은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안전성·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음.
- 의료기관에서는 말라리아 치료제 ‘피라맥스정’을 코로나19 예방·치료 목적으로 처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

붙임 :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 의사
협의회장